투 자 설 명 서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

이 투자설명서는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개인가입용)

2. 자산운용회사명 : PCA투자신탁운용(주)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번호 : 02-2126-3500

3. 판 매 회 사 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
   - 굿모닝신한증권(1588-0365)
   - 하나은행(1588-1111)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회사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7년 3월 20일

5.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A ASSET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나. 연평균 수익률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 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Ⅴ.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요약

이 투자설명서 요약은 본 투자설명서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각 부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본 투자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

2. 신탁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MMF형,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PCA투자신탁운용㈜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잔존만기가 짧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투자신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단기 투자신탁상품 특성에 충실한 체계적인 운용 Process
  - 안정된 현금흐름을 중시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유동성이 높은 신용도 최우량 채권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등) 편입
  - 대외 신용도 우량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기 유동자산 (CD, Call 등) 운용

-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 우량 국공채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용
  - 펀드만기를 고려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대외신용도를 척도로 한 단기 유동성자산의 운용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이자율 변동 위험, 괴리율 발생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개별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여 신탁재산의 안정적 수익을 높이고 유동성 자산과 같은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하므로 5 등급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초단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투자실적 추이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1 년차 2003.04.10 ~ 2004.04.09	2 년차 2004.04.10 ~ 2005.04.09	3 년차 2005.04.10 ~ 2006.03.31
투자신탁	3.80%	3.35%	3.23%

수익률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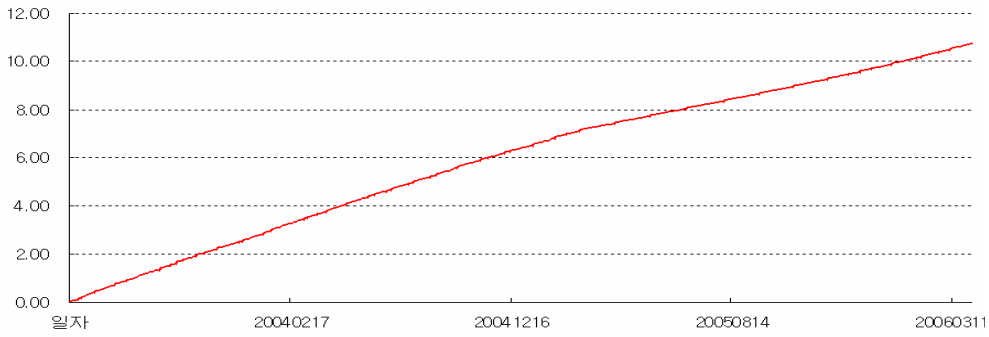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Ⅲ.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없 음	
	후취 판매수수료	없 음	
	환매수수료	없 음	
	합 계	-	-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925%**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26%**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비용 [1)]	순자산총액의 **연 0.0054%**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4029%**	-

주)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05년 4월 1일~2006년 3월 31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2.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6. 2.15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다만, 최초설정일에는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매입·환매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매입 및 환매의 당일 결제>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 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유휴자금을 MMF 에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급여입금, 공과금 납부 등 주기적으로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환매의 당일 결제>

◈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 억원 중 큰 금액)을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
(관련 근거조항 : 시행령 제 60 조제 2 항제 1 호 및 시행규칙 제 19 조제 1 항)

※ 상기의 매입 및 환매와 관련한 예외 사항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설명서 요약은 본 투자설명서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각 부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본 투자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부 당해 투자신탁의 기본 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

2. 신탁계약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MMF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PCA투자신탁운용㈜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3.04.10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R1호 설정

6. 수탁고 추이

수탁고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현재 20060331	6개월전 20050930	1년전 20050331	1년6개월전 20040930	2년전 20040331
수탁고금액	564,982	210,982	219,481	182,481	203,500
수탁고증가율	167.79%	-3.87%	20.28%	-10.33%	37.50%

* 수탁고 증가율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잔존만기가 짧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투자신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단기 투자신탁상품 특성에 충실한 체계적인 운용 Process
  - 안정된 현금흐름을 중시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유동성이 높은 신용도 최우량 채권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등) 편입
  - 대외 신용도 우량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기 유동자산 (CD, Call 등) 운용

-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 우량 국공채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용
  - 펀드만기를 고려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대외신용도를 척도로 한 단기 유동성자산의 운용

3. 주요 투자위험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이자율 변동 위험, 괴리율 발생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개별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여 신탁재산의 안정적 수익을 높이고 유동성 자산과 같은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하므로 5 등급중 5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수시입출금이 자유로운 초단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수준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국내주식형, 해외 단일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2등급	높은 위험	인덱스형, 국내 및 해외주식혼합형 해외 복수국가 주식형 (재간접형 포함)
3등급	중간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혼합형, 파생상품형
4등급	낮은 위험	국내 및 해외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5.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1 년차 2003.04.10 ~ 2004.04.09	2 년차 2004.04.10 ~ 2005.04.09	3 년차 2005.04.10 ~ 2006.03.31
투자신탁	3.80%	3.35%	3.23%

수익률 추이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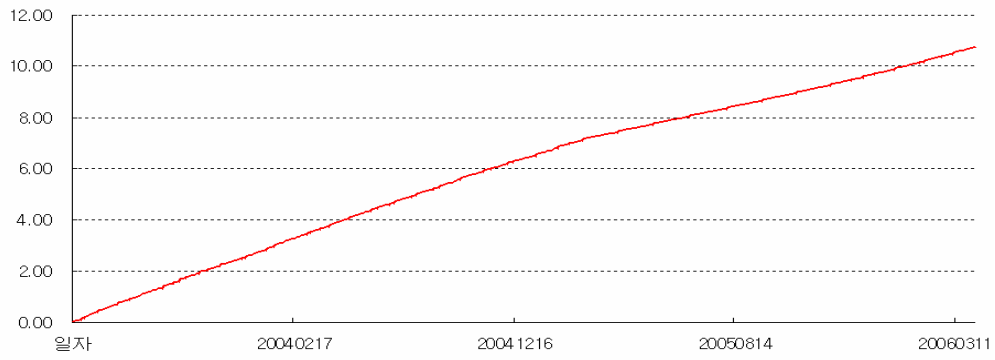

연평균 수익률

연도	6 개월 2005.10.01 ~ 2006.03.31	1 년 2005.04.01 ~ 2006.03.31
투자신탁	3.54%	3.31%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925%**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26%**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5%**	
	기타비용 [1)]	순자산총액의 **연 0.0054%**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4029%**	-

주)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05년 4월 1일~2006년 3월 31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수익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1	127	223	513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6. 2.15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매입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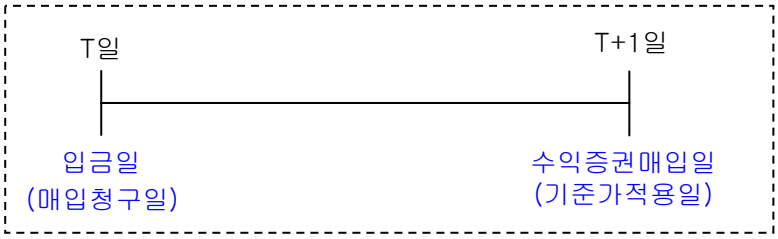

(2) **오후 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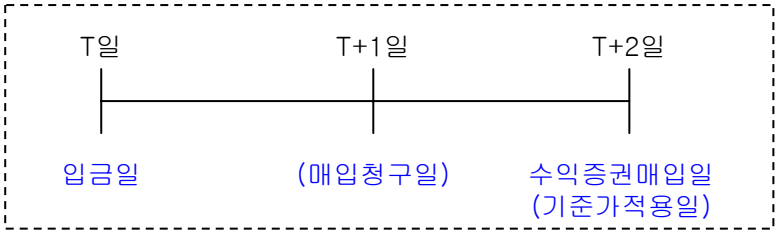

주 1)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 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 합니다.

(3) 다만, 최초 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2. 환매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시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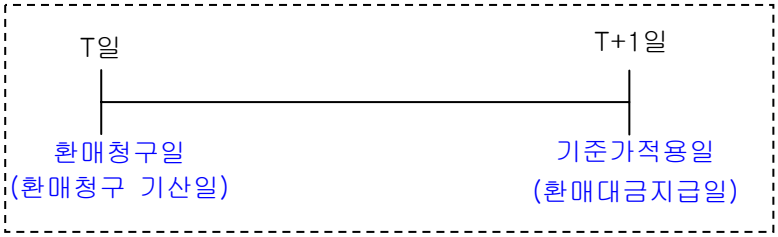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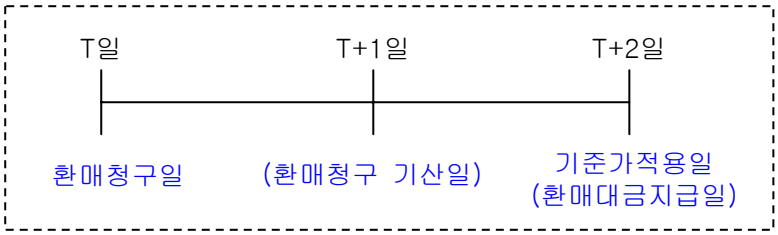

<매입·환매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매입 및 환매의 당일 결제>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 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 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유휴자금을 MMF 에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급여입금, 공과금 납부 등 주기적으로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환매의 당일 결제>

◈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 억원 중 큰 금액)을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
(관련 근거조항 : 시행령 제 60 조제 2 항제 1 호 및 시행규칙 제 19 조제 1 항)

※ 상기의 매입 및 환매와 관련한 예외 사항은 판매회사에서 해당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3. 이익 등의 분배

(1)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단기 투자신탁상품 특성에 충실한 체계적인 운용 Process
  - 안정된 현금흐름을 중시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유동성이 높은 신용도 최우량 채권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등) 편입
  - 대외 신용도 우량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기 유동자산 (CD, Call 등) 운용

-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 우량 국공채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용
  - 펀드만기를 고려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대외신용도를 척도로 한 단기 유동성자산의 운용

2. 투자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리율 발생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회사는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채권, 유동성자산 등	**100%**	**(투자대상등)**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3.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법에 의해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4.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선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투자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특별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동일거래 상대방	동일종목 투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환매조건부 채권	채권총액의 5% 초과하여 매도하는 행위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수익증권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 일을 초과하는 행위	
주식 및 외화자산 및 구조화된 자산 등의 투자	다음 각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 특별한 법률에 의한 자산 또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 - 단기금융투자신탁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간접투자증권 - 주식관련 사채 및 사모사채 -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채권 등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 1 년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	
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 일을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전자공시
공시장소	**판매사 각 영업지점 및 운용사,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타워 15층 연락처: 02-2126-3500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 위탁>

- 일반사무관리회사

PCA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는 수익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는 사모펀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회계처리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2001년 2월 5일부터 “회계처리 대행 및 자산운용정보 제공 계약”을 통하여 HSBC 펀드서비스에 위탁하고 있으며, 본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HSBC 펀드서비스에 해당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당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6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의 책임은 위탁한 자에게 있습니다.

3. 최근 2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백만원)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05.03	2004.03
자산총계	14,694	14,719
1. 유동자산	9,279	9,452
2. 고정자산	5,415	5,267
투자자산	4,345	4,291
유형자산	564	836
무형자산	95	140
이연자산	411	-
부채 및 자본총계	14,694	14,719
1. 유동부채	1,059	760
2. 고정부채	16	1
3. 부채총계	1,075	761
4. 자본금	15,000	15,000
5. 자본잉여금	-	-
6. 이익잉여금	- 1,381	- 1,042
7. 자본총계	13,619	13,958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05.03	2004.03
1. 영업수익	5,695	4,455
2. 영업비용	6,551	6,216
3. 영업이익	- 856	- 1,761
4. 영업외수익	112	1,000
5. 영업외비용	7	161
6. 경상이익	- 751	- 922
7. 특별이익	-	-
8. 특별손실	-	-
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751	- 922
10. 당기순이익	- 339	- 935

4. 운용자산 규모 (일임자산 포함)

(2006. 3. 31기준, 단위: 억좌)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재간접	총계
수탁고	11,809	5,317	14,522	9,003	4,058	5,657	53,59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출생년도	주요 경력
장지호	1978	서울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04.10~05.7) PCA 투신운용 채권운용팀 (05.8~현재)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연락처: 1588-0365
회사연혁	1984. 4 쌍용투자증권 설립 1984. 5 국내증권사 최초로 외국에서의 증권업무 인가 1992. 12 개방원년 국제영업부문 1위 1993. 7 Euromoney사 선정 한국 최우수 증권사 1994. 6 쌍용타워 준공 1995. 7 Euromoney사 선정 한국 최우수 증권사 (94년에 이어 두번째) 1996. 10 Asiamoney사 선정 순수 국내 최우수 증권사 1999. 5 굿모닝증권으로 상호 변경 2002. 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연락처: 1588-1111
회사연혁	1959.12.01 설립 1999.07.20 판매회사 등록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와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 홈페이지 주소>

판매사	홈페이지 주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은행	www.goodi.com www.hanabank.com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연락처: 1588-9999
회사연혁	1963.02.01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상호로 창립 1994.09.30 한국증권거래소에 국민은행 주식 상장 1998.12.31 한국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0.12.12 한국주택은행과 합병 2001.11.01 국민·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2005.12.20 아시아 10 대 은행 선정 (Moody's)

2. 주요 업무

<업무범위>

①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와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6층 연락처: 02-3771-9800
회사연혁	2000.03.23 설립

2. 주요 업무

<업무 범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당해 투자신탁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 인출, 계약해지, 순자산가치의 산정, 순자산가치의 자산운용사, 판매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보 및 관련 회계처리자료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 각목의 업무 외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하여서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운영에 관한 사무
- 간접투자재산의 계산업무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02-739-3590
회사 연혁	2000. 06. 20 설립	2000. 05. 29 설립	2000. 06. 16 설립
	2000. 06. 29 등록	2000. 07. 01 등록	2000. 06. 29 등록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①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③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④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①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수익자명부> 수익자명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합니다.

②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에 관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수익자 명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나.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다.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③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위의 가 와 나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가나다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소집절차>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 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수탁회사의 변경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공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사항 확인 장소 및 인터넷 주소>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www.pcaasset.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판 매 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 매 직 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그 주요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